

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 
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
(기획경제국 재무과 소관)



**행정재경위원회**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45호
- 나. 제출자 : 고성미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5. 31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5. 31.

## 2. 제안이유

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, 예산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예산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결산서 등의 제출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 (안 제3조)
- 다.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분기별 보고 (안 제4조 )
- 라. 지방회계법 등에 따른 구청장의 의무 (안 제5조)

#### 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 및 제150조
- 「지방회계법」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,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·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-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.
-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상황에 대하여 의회가 집행부의 예비비 집행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### 지방재정법

[시행 2023. 5. 16.] [법률 제19031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**제43조(예비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6. 9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, 2021. 1. 12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#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**제144조(예비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50조(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지방회계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**제14조(결산의 수행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·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  
<개정 2021. 1. 12.>

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회,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지방회계법 시행령

[시행 2022. 1. 13.] [대통령령 제32223호, 2021. 12. 16., 타법개정]

**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(이하 “감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16.>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